교육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2023. 8. 25.(금) 15:00 보도시점 (인터넷) 2023. 8. 27.(일) 09:00
(지 면) 2023. 8. 28.(월) 조간

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

- 가해자-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
-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
-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
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**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**(4.12.)'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**후속 조치**를 **9월 1일(금)**부터 시행한다.

▸ 가해자-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(3일→7일)

가·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.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,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*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,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,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.

* (예시)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, 차주 월요일 분리 해제

<즉시분리 절차>

학교폭력 사안 인지(접수)	▶	분리방법 결정(24시간 이내)	▶	가해자 분리
•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※ 분리 의사 확인서		• 분리 대상, 기간,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(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) ※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		•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•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(유선통화 등)

※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, 기간, 출결,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

‣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

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(예시: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)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(7일 이내)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.

‣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

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,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'가해학생의 불복사실'과 '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'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.

‣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

아울러,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'학교폭력 제로센터'를 시범 운영한다.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(One-stop)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, 피해학생 상담·치료, 피·가해학생 관계 개선,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.

[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]

장상윤 교육부차관은 "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**심리적 불안감 해소, 2차 피해 방지**를 위한 노력 등 **두터운 피해학생 지원**이 매우 중요하다."라고 강조하며, "앞으로 학교폭력 **피해학생 지원제도**를 **강화**해 나가기 위해 **시도교육청**과 지속해서 **협력**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1.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내용
2.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계획

담당 부서	책임교육정책실 학교생활문화과	책임자	과 장	문진철 (044-203-6972)
		담당자	행정사무관	정민재 (044-203-6975)
			교육연구사	길경섭 (044-203-697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내용**

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 내용

현행	개정
○ 가해자 즉시분리 기간 3일	⇨ ○ 가해자 즉시분리 기간 7일
○ 학교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가해학생에게 부과된 조치가 이행 전이라도 전학 조치 우선 시행	○ 8호 전학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전학간 학교에서 부과된 가해학생 조치 이행 ○ 즉시(7일 이내)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 요청
○ 신설	○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(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) ☞ 피해학생 측에게 '불복사실'과 '심판·소송참가'를 통한 의견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진술권을 보장

붙임2 **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계획**

□ 개요

○ (시범 기간) ’23. 9. ~ ’23. 12.(4개월)

○ (시범 운영) **서울·부산·인천·울산·경기·강원·충북·충남교육청**

※ ’24년부터 ‘학교폭력 제로센터’가 전체 시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사례 도출

□ 운영 내용

○ (**통합지원 구축**) 학교폭력 **사안처리**, 피해학생 **심리상담** 및 **치료**, 피·가해학생 **관계회복**, 피해학생 **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일원화**

[통합지원 체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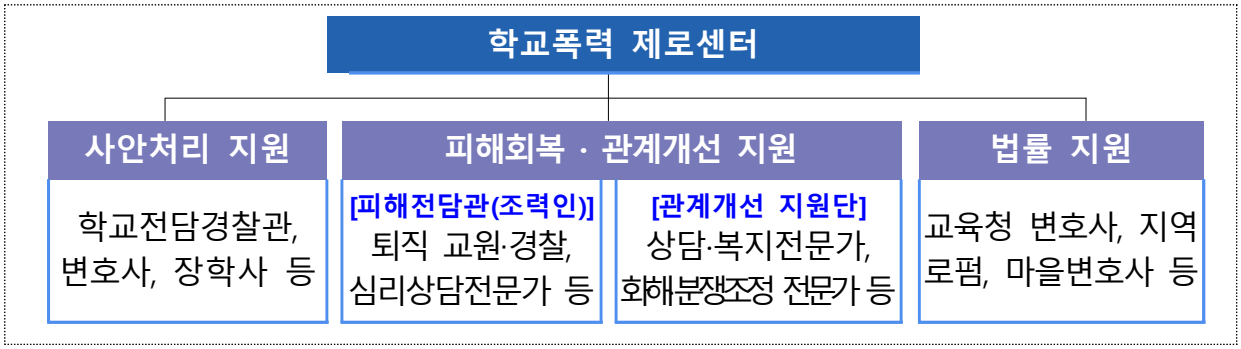

○ (**원스톱 지원**) **단 한번**의(One-Stop) **신청**으로 단위학교 및 피해학생의 필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**맞춤형 전문가** 및 **프로그램 지원**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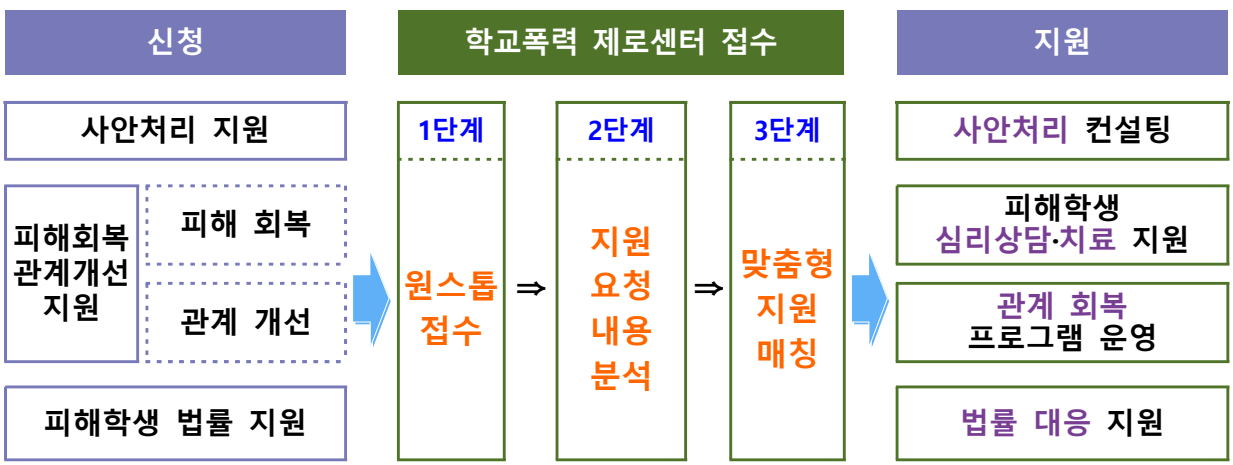
[시범 운영 주요 내용]